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정당현수막은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6.10.) 및 시행('22.12.11.)됨. 그러나, 정당현수막에 대한 개수, 규격 등의 제한이 없어 법 시행 이후 국민 불편, 안전사고, 도시미관 저해,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규정하고, 정당현수막의 장소, 규격 등 표시·설치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3.11.1. 행안위 의결, '24.1.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 국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당현수막의 장소, 규격 등 표시·설치방법 규정(안 제35조의2)

- 1) 종전 시행령은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정당 및 설치업체 연락처, 정당명, 표시기간 작성)과 기간(15일 이내)만 법률 위임을 받아 규정함
- 2)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새로 위임한 사항인 정당현수막의 장소, 규격 등 그 외 표시·설치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함

- 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현수막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규정
- ② 정당현수막 규격 (10m²이내) 규정
- ③ 표시기간 표시방법과 최소 글씨크기(세로 크기 5cm) 규정
- ④ 설치 방법(다른 현수막·신호기·안전표지 가림 금지, 도로 횡단 금지, 가로등·전봇대 등에 현수막 2개 초과 설치 금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 구간 내 현수막 높이 2.5m 미만 설치 금지)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표시할 것”을 “표시하되 글씨의 크기는 세로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작일과 종료일을 표기할 것.

제35조의2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표시 시작일은 표시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의2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부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시하는”을 “표시·설치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4. 다른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를 가리지 아니할 것.

5.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설치하지 아니할 것.

6.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가로등 기둥, 전봇대에는 현수막이 2개를 초과하도록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보행자의 통행 또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장소에서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가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이때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는 2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가.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나.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① 법 제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가. 시장등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 금지 표시가 설치된 곳

③ 그 외 현수막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2(적용 배제) <신 설>	제35조의2(적용 배제) ① 법 제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가. 시장등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 금지 표시가 설치된 곳
정당이 법 제8조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 ----- ----- 표시 · 설치하는 ----- -----.
1.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1. ----- -- 표시하되 글씨의 크기는 세로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2호에 따른 표시기간 <단서 신설>	라. ----- 다만, 시작일과 종료일을 표기할 것.
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2. -----

이내로 할 것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 다만, 표시 시작
일은 표시기간에 포함하는 것
으로 본다.

3. 현수막의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4. 다른 현수막이나 「도로교통
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
는 안전표지, 「개인정보보호
법」 제2조에 따른 영상정보처
리기기를 가리지 아니할 것.

5.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설치하지 아니할 것.

6.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가
로등 기둥, 전봇대에는 현수막
이 2개를 초과하도록 설치하
지 아니할 것.

7. 보행자의 통행 또는 차량 운
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장소에서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가 2.5미
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이때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는 2미터 이
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가.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

<u><신 설></u>	<u>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u> <u>이내인 곳</u> <u>나.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u> <u>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u> <u>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u> <u>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u> <u>곳</u> <u>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u> <u>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u> <u>내인 곳</u> <u>③ 그 외 현수막의 표시·설치</u> <u>와 관련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u> <u>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544